

2016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증감없이 79억 2천 9백만원과 같음.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7,929	7,929	0	0
시 세	-	-	-	-
세외 수입	경상적	1,060	1,060	-
	임시적	1,515	1,515	-
보조금	1,887	1,887	-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3,467	3,467	-	-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조 9,200억 9천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조 6,245억 6백만원 대비 11.3%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총 계	2,624,506	2,920,098	295,592	11.3%	
행정 관리	소 계	232,971	232,971	-	-
	행정운영경비	107,316	107,316	-	-
	재무활동	12	12	-	-
	사업비	125,643	125,643	-	-
교 부 금	2,391,535	2,687,127	295,592	12.4%	

-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조정교부금” 기정 예산(2조 3,915억 3천 5백만원) 대비 2,956억원(12.4% 증)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6 예산		2016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10월말 현재)		증감	비율
합 계	2,391,535	2,391,535	2,687,127	295,592	12.4%
조정교부금	2,391,535	2,391,535	2,687,127	295,592	12.4%

II . 검토의견

1. 세출예산 검토

가. 조정교부금

○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조정교부금”을 기

정 예산(2조 3,915억 3천 5백만원) 대비 2,956억원(12.4%)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조정교부금	2,687,127,093	2,391,535,472	295,591,621	◦ '16년 조정교부금 증가액 295,591,621 - '15년도 결산차액 337,181,024 - '10년도 초과교부금 일부 정산△41,589,403

○ 2010년 자치구 초과교부금 잔액 1,100억원 중 일부를 2015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정산(25%, 276억원)하였으며, 2016년 추가경정예산에서 415억원을 정산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6년간 조정교부금 정산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비 고
'10년도	16,043	14,849	△1,194	◦ '14~16년에 걸쳐 778억원 정산 ◦ 정산 잔액 △416억원
'11년도	15,393	17,267	1,874	◦ '12년 추경 전액 정산 ('12년 보통세 감액분 △2,000억원과 전액 상계)
'12년도	16,846	16,931	85	◦ '14년 본예산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85억원 상계)
'13년도	18,330	18,711	381	◦ '15년 본예산 전액 정산
'14년도	19,763	20,370	607	◦ '15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277억원 상계)
'15년도	22,213	25,585	3,372	◦ '16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416억원 상계)

〈2010년 초과교부금 자치구별 정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0년 초과교부	1차 상계처리		2차 상계처리		3차 상계처리	
		잔액	'12년 결산	잔액	'14년 결산	잔액	'15년 결산
조정교부금	△119,359	△110,858	8,501	△83,179	27,679	△41,589	41,589
일반교부금	△107,369	△99,718	7,651	△73,896	24,911	△37,403	37,403
종로구	-	-	-	-	-	-	-
중 구	-	-	-	-	-	-	-
용산구	△7,883	△7,326	557	△5,446	1,880	△2,723	2,723

성동구	△2,772	△2,576	196	△1,915	661	△958	958
광진구	△9,661	△8,978	683	△6,674	2,304	△3,337	3,337
동대문	△1,751	△1,628	124	△1,210	418	△605	605
중랑구	△4,312	△4,007	305	△2,979	1,028	△1,489	1,489
성북구	△5,634	△5,236	398	△3,892	1,343	△1,946	1,946
강북구	826	826	-	-	△826	-	-
도봉구	△4,679	△4,348	331	△3,232	1,116	△1,616	1,616
노원구	△5,523	△5,132	390	△3,815	1,317	△1,908	1,908
은평구	△155	△144	11	△107	37	△54	54
서대문	△8,193	△7,614	579	△5,660	1,954	△2,830	2,830
마포구	△6,823	△6,341	482	△4,714	1,627	△2,357	2,357
양천구	△10,625	△9,875	751	△7,341	2,534	△3,670	3,670
강서구	△2,062	△1,916	146	△1,425	492	△712	712
구로구	△6,147	△5,712	434	△4,247	1,466	△2,123	2,123
금천구	△4,949	△4,599	350	△3,419	1,180	△1,710	1,710
영등포	△11,512	△10,698	813	△7,953	2,745	△3,976	3,976
동작구	△6,045	△5,617	427	△4,176	1,441	△2,088	2,088
관악구	86	86	-	-	△86	-	-
서초구	-	-	-	-	-	-	-
강남구	-	-	-	-	-	-	-
송파구	△3,181	△2,956	225	△2,197	759	△1,099	1,099
강동구	△6,375	△5,925	450	△4,404	1,520	△2,202	2,202
특별교부금	△11,990	△11,140	850	△8,372	2,768	△4,186	4,186

〈추경 편성 전후 자치구별 교부액 비교표〉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2016년 추경액	증가액
조정교부금	23,915	26,871	2,956
일반교부금	21,524	24,184	2,661
종 로 구	439	520	81
중 구	143	199	56
용 산 구	450	505	56
성 동 구	734	833	98
광 진 구	981	1,077	96
동 대 문 구	970	1,095	125
중 랑 구	1,186	1,318	132

성 북 구	1,355	1,503	148
강 북 구	1,167	1,309	142
도 봉 구	1,190	1,317	127
노 원 구	1,767	1,954	187
은 평 구	1,230	1,385	155
서 대 문 구	984	1,084	100
마 포 구	728	818	91
양 천 구	1,087	1,194	107
강 서 구	1,179	1,331	152
구 로 구	1,092	1,214	123
금 천 구	737	823	86
영 등 포 구	580	645	65
동 작 구	875	976	101
관 약 구	1,221	1,378	157
서 초 구	75	147	72
강 남 구	-	-	-
송 파 구	432	527	95
강 동 구	922	1,030	108
특별교부금	2,392	2,687	295

○ 201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현 자치구 재정 어려움 해소 여부와 연계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3차 정산 이후에도 415억 8천 9백만원의 정산 잔여금이 있는바, 잔여금에 대한 해소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는 2010년 조정교부금 초과교부액 정산유보와 관련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2015. 9. 4) 자치구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하여 매년 교부할 교부액에서 정산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산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 일정액을 정산하여 자치구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2010년도 조정교부금 초과교부금은 4회에 걸쳐 분할 정산하기로 함.

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

○ 행정국은 2016회계연도 사업인 “서울기록원 건립”181억 4천만원 중 165

억 2천 8백원(91.1%) 및 “서울시민카드 사업시행자 공정한 선정” 전산개발비 5천 8백만원 전액을 2017년도로 명시이월 시켜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고 있음.

- “서울기록원 건립”사업은 2015회계연도에도 명시이월(23억7천7백만원)시켜 집행하였으며, 2016회계연도에는 암반 터파기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 소음, 진동 민원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재차 이월시키고자 하고 있는바, 이월 사업뿐만 아니라 2017회계연도에 연차별로 편성하고 있는 당해 사업(34억7천1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추진에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민카드 사업시행자 공정한 선정’ 사업은 2016년 사업 추진 중 ‘모바일 플랫폼 기반 서울시민카드 발급’으로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집행 차질 문제로 전산개발비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은 기존의 신용카드 통합사업을 통한 시민카드발급사업에서 서울시 공공시설별(서울도서관, 세종문화회관, 역사박물관, 삼청각, 시립교향악단, 시립미술관, 잠실수영장, 잠실피트니스클럽, 잠실실내골프연습장, 청소년수련관(17), 녹색장난감도서관, 서울상상나라,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등) 회원카드를 모바일 카드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변경된 서울시민카드 사업이 투자비용 대비 누릴 수 있는 혜택 및 성과가 적정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2017년 편성예산 7억9백만원, 전년대비 1,174% 증액).
- 명시이월은 당해 사업예산 편성시 회계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에 다음 연도로 넘겨쓰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바, 당초 예산 편성시점(2016년도 예산 편성시) 또는 당해 연도 추경 시까지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 사안임.
- 그러나, 해당 사업의 경우는 2016년도 예산 편성 시점이 아닌 회계연도 종료시점인 201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점에 명시이월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으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게 면피용으로 명시이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이월과 차별성이 없는 예산이월제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겠음.

- 이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고 기회비용을 상실시켰으며, 예산 투입의 시기를 지연시킨 바, 향후 명시이월제도의 법적 취지 등을 감안하여 적법한 이월제도의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행정국 명시이월 현황〉

○ 명시이월 내역 : 총 2건 16,586,746천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 1건 16,528,746천원, 일반회계 : 1건 58,000천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명시이월내용	예산과목	2016 예산액	2016 이월액	이월사유
서울기록원 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16년 골조 공사관련 예산	계	18,140,000	16,528,746	◦ 암반 터파기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 소음, 진동 민원으로 터파기 공사 지연으로 기초 및 골조공사 관련 예산 집행 차질 발생
		시설비	16,638,000	15,486,746	
		감리비	1,470,000	1,010,000	
		시설부대비	32,000	32,000	
서울시민카드 사업시행자 공정한 선정 (일반회계)	'16년 서울시민카드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정보화 상세 설계 용역 예산	계	58,000	58,000	◦ 2016년 사업 추진 중 모바일플랫폼 기반 서울시민카드 발급으로 사업내용이 변경('16.8.10 시장보고)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집행 차질 발생
		전산개발비	58,000	58,000	

〈참고 자료〉

2010년 조정교부금 초과교부액 정산뷰보 관련 자료

제 목	2010년 조정교부금 초과교부액 정산뷰보		
제안기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소관부서	서울시 자치행정과

□ 건의배경

-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개별급여 도입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자치구 재정 건전성 악화 지속
- 2010년 조정교부금 초과교부액 중 미정산액 277억원 정산 예정

◆ 2010년 조정교부금 초과교부액 발생사유

-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호응하여 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하였으나, 취·등록세 수입 급감으로 결산결과 1,194억원 초과교부

◆ 그간 정산내역

- 1차 정산(상계처리) : 2012년 결산분 85억(정산잔액 1,109억)
- 2차 정산(상계처리) : 2014년 결산분 277억(정산잔액 832억)

◆ 향후 정산예정 : 2회에 걸쳐 832억 정산완료

□ 문 제 점

- 서울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자치구 보통교부금 증가분 581억원을 전액 복지예산 미편성분으로 충당후에도 자치구 미편성액은 708억원에 달함.
- 자치구 재정여건상 복지비 확보가 어렵고,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건의내용

○ 자치구 재정건전성 회복시까지 조정교부금 초과교부액 정산 유보

-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정산시기 및 정산액 등 결정 후 추진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대문구

서대문구 홈페이지



sdm.go.kr

수신 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구청장협의회 회장단·시간부진 간담회」 논의사항 관련 건의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16일 있었던 '구청장협의회 회장단과 시간부진 간담회' 시, 조정교부금과 관련해 논의된 사안에 대하여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6. 8. 16.(화) 7:30 ~ 9:00
- 장 소 : 포시즌스 호텔 2층 보칼리노
- 참석자 : 총 10명
 - 협의회(5) : 서대문구청장, 성동구청장, 중구청장, 구로구청장, 서초구청장
 - 서울시(5) :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장
- 논의내용 : 2010년 및 2015년 조정교부금 정산과 관련한 사항

○ 건의사항

- '15년 보통교부금 정산분의 자치구 조속 배분('16년 시 정리추경에 반영)
- '16년 시 정리추경에 반영할 경우, 8월 중 가내시액 사전 통지 요망
- '10년 초과교부금 정산잔액에 대해 '16년부터 연차별로 1/2씩 상계처리. 끝.